

# 협력업체 품질활동능력 평가 가이드

- 한국전력기술 -

01

#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안내

# 품질활동능력 평가항목

-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품질활동능력 평가는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분 (총 15점)

1	2	3	4
품질구성 (2점)	품질요원 자격부여 (1점)	품질시스템 수립 <b>(8점)</b>	품질시스템 도입경과 (1점)
5	6	7	
대외감사/심사수검 실적 (1점) * 최근 2년	대내교육 실적 (1점) * 최근 2년	대외교육 실적 (1점) * 최근 2년	

- 합격기준 : 80% (15점 중 12점 이상)

# 항목별 확인내용 및 제출문서

평가항목	확인내용	제출문서
1. 품질조직	· 품질관리 전담조직 및 독립성 확인	· 회사 조직도 및 조직별 인원 현황
2. 품질요원 자격부여	· 품질감사자, 검사/시험요원의 자격부여 및 보유현황 확인	· 절차에 따른 자격인증 관련 증빙문서
3. 품질시스템	· 유효한 품질인증서 보유 여부 확인 · 인증서 미보유 시, 절차서/표준 수립 상태 확인	· 인증서 사본 · 품질매뉴얼/계획서 · 수립된 품질시스템(절차서 등) 목차
4. 품질시스템 도입경과	· 품질시스템, 표준 도입경과 확인	· 상기 제출문서로 대체 · 필요시 개정이력 등 추가 제출
5. 대외감사/심사수검 실적	· 대외감사, 검사 및 심사 수검실적 확인 (최근 2년)	· 대외감사, 검사 및 심사 수검 증빙문서 (계획, 회의록, 보고서 등)
6. 대내교육 실적	· 대내교육훈련 실적 확인(품질교육 포함) (최근 2년)	· 교육훈련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문서 (교육훈련계획, 참석기록지 등)
7. 대외교육 실적	· 대외교육훈련 실적 확인(품질교육 포함) (최근 2년)	· 교육훈련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문서 (교육이수/수료증, 교육시간표 등)

02

#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

#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(1)

품질조직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하나요?

- 품질조직의 유무와 독립성으로 품질조직 항목을 평가하기에 조직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.
- 조직의 독립 여부는 조직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질보증계획서 등 조직의 책임과 권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
자격평가 대상인 품질요원은 누구이며,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나요?

- 먼저, 등록 신청한 업체의 절차에 따라 자격 부여된 유자격 품질감사자의 유무를 확인합니다. 이때,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부여한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자격부여에 대한 증빙문서는 절차에 따라 자격 부여 승인권자의 서명이 포함된 유효한 자격 인정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##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(2)

품질시스템 수립 항목의  
인증서 평가는 어떻게  
이루어 지나요?

- 먼저 인증서에 기재된 회사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 그 후 지원한 분야가 인증서의 인증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며, 인증유효기간이 평가일을 기준으로 유효한지 판단하여 모두 만족하는 경우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합니다.

품질시스템 도입경과는  
어떻게 평가하나요?

- 수립된 품질시스템(절차서, 지침서 등)의 표지, 목차 또는 전문을 제출하시면 도입경과 연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개정날짜만 명시되어있는 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입경과 연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, 이를 증빙할 개정이력 등의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##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(3)

대외감사 수검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
- 대외감사는 발주처 또는 인증기관 등 으로부터 받은 수검 또는 심사를 인정하고 있으며, 상기 기관으로부터 수검 또는 심사를 받았다는 증빙자료(계획, 회의록, 보고서 등)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감사 수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자료는 공고일자로부터 2년 내의 자료만 유효하며, 그 기간이 지난 자료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(대내 및 대외교육훈련 실적 역시 동일함)

정보보안 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대내교육훈련 실적으로 포함되나요?

- 사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모두 대내교육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질문의 예시와 같은 교육들은 품질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품질교육 실적이 없다면 차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(결과보고서, 참석기록지 등)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제출하였어도 교육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.

##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(4)

어떤 교육훈련이 품질교육에 해당하나요?

- 품질요건을 기반으로 수립된 시스템 문서(매뉴얼, 절차서 등) 및 시스템 문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문서(감사보고서, 경영검토보고서 등)에 대한 교육훈련을 품질교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또한, 품질과 관련된 표준 및 요건에 대한 교육도 품질교육으로 인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나, 기술기준에 대한 교육은 품질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대외 품질교육에는 어떤 교육이 있나요?

- 전문 교육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교육명에 "품질" 또는 "품질요건"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.
- 교육명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교육 커리큘럼에 품질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질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교육명칭과 상관없이 평가자들이 품질교육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표(또는 커리큘럼)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## 협력업체 품질평가 문의처



품질경영처 품질기획팀

김수진 사원

054-421-7865

[sujinkim@kepcenco.com](mailto:sujinkim@kepcenco.com)